「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나. 주요내용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008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초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
- 일상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및 정부24 등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비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3. 03.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3. 주요내용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008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초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등기기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

- 일상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및 정부24 등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비 필요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상업등기규칙」제26조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고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조례안 본문 중 용어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호 “지역건설산업체” 정의에서 기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1

제출연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필요.

2. 주요내용

개정 법령용어 반영 : 안 제2조제2호

(기존)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1. 21. ~ 2026. 2. 10.) 결과, 제출 의견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6-137호, 건설과-3975(2026. 2. 11.)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176(2026. 1. 16.)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176(2026. 1. 16.)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561(2026. 1. 16.)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838(2026. 2. 12.)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3436(2026. 2. 25.)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건설과장 오현웅
연락처	(033) 330 - 2406